

# 5·18공법단체 출범 1년 만에...비리·내홍으로 '시끌'

### 부상자회 일부 회원·임원 알력 다툼 속 회장 직권남용 징계안 갈등 공로자회 공금·후원금 횡령에 유령직원 급여 등 내부 감사로 드러나 지역사회선 "42년 숙원이던 공법단체 설립 의미 퇴색" 비판 잇따라

일부 5·18 공법단체가 지난해 출범 이후 1년만에 비리와 내홍에 휩싸였다.

5·18민주화운동 부상자회는 회원·임원들의 알력 다툼으로 징계와 고소·고발전을 벌이고 있다. 5·18 공로자회는 내부 감사에서 공금·후원금 횡령 의혹이 불거져 파문이 일고 있다.

지역사회에서는 "광주·전남 지역민들의 42년 숙원을 이루고 공법단체를 설립한 의미가 퇴색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5·18부상자회, 독단적 운영 회원들 반발=5·18 부상자회는 7일 오전 10시에 광주시 서구 차평동 5·18민주화운동 교육관에서 황일봉 회장을 징계하는 안건에 대한 상벌심사위원회를 열었다. 상벌심

사위는 5·18부상자회 이사회가 지난 5일 긴급이사회 소집 공고를 내고 황 회장에 대한 징계안을 상정함에 따라 열렸다.

징계 사유로는 황 회장이 직권을 남용해 이사회, 회원들과 의견 수렴 없이 지난 2월 19일 특전사 동지회와 '공동선언서'를 개최했다는 점이 꼽혔다. 특전사 동지회는 5월에 대한 사죄 없이 군복을 입고 5·18국립묘지를 참배해 시민 사회단체의 반발을 산 단체다. 또 황 회장이 국가보훈부 직원과 비공개 만남을 가진 뒤 '정용성 역사공원' 설립을 반대한다는 신문 광고를 게재(8월 29일자 광주일보 7면)하고 집회에 참석한 것, 일부 직원 급여를 165만원으로 감액하려 한 것 또한 직권남용 사례로 꼽혔다.

이밖에 직원 급여, 행사비 지출 등 행정 서류 결재를 안 해 직무유기를 했다는 점도 징계 사유로 제시됐다.

황 회장은 이날 오전 10시 30분께 5·18교육관 내 상벌위원회 회의장에서 징계가 무효라는 주장을 폈다. 정관상 회장은 징계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상벌위원 중 이사회에서 독단적으로 임명한 무자격 위원이 두 명 있다는 이유에서다.

오후 2시께에는 5·18부상자회 회원들을 부상자회 회장실로 소집하고 회원들과 고성을 지르며 말다툼을 하기도 했다.

또 자필로 작성한 '직위해제 통지서'를 5·18부상자회 상벌위원 5명과 사무총장, 조직국장에게 통보했다. 이날 황 회장은 검찰에 5·18부상자회 전 간부 직원 A씨가 국가보조금법을 위반했다고 진정서를 내기도 했다.

◇5·18공로자회, 비리 온상으로 전락=5·18공로자회가 지난해 12월부터 올 6월까지 내부 감사를 한 결과 공금 횡령, 후원금 무단 사용, '유령 직원'

급여 지급 등 비리가 무더기 적발됐다.

감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5·18공로자회는 지난해 1월 출범한 이후 1년 5개월동안 근태관리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았으며, 감사기간인 지난 6월 27일 일괄적으로 작성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직원이 무단 결근했던 사실도 모두 근무한 것으로 처리하는 등 허위 문서를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올 초에는 채용 이후 한 번도 출근하지 않은 운전원 두 명에게 각각 528만원씩 총 1056만원의 급여를 국가보조금으로 지급했다.

특정 직원 네 명에게 월 240만~280만원의 추가 보수를 주겠다고 이사회 의결 없이 5·18기념재단 지원금을 유용한 사실도 밝혀졌다. 또 공로자회 임원, 지방장, 외부인의 자녀 등 수십명의 통장을 이용해 돌려막기식 차입·상환을 반복해 추가 보수를 준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한 차입금은 총 2398만원에 달하며, 이 중 1035만원은 아직 상환하지 못했다.

지난 2월 보훈부로부터 받은 국가지원금 3020만원으로 중고차를 구입하고, 한 달만에 되팔아 540

만원 손해를 끼친 건도 감사에서 드러났다.

지난 5월 '영향 제합'을 통해 받은 후원금 60여만원은 통장에 입금하지 않고 유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실체가 불분명한 부채가 있다는 점도 지적을 받았다. 5·18공로자회 측은 전신인 5·18구속부상자회 시절의 빚이라며 특정 5·18부상자회 직원에게 15억원을 변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증거서류나 장부 기록이 전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밖에 외부인이 5·18공로자회 직원 채용 과정에 관여해 면담, 채용 결정을 한 정황이 발견돼 '비선 실세'에 대한 의혹도 감사 결과 제기됐다.

지역사회에서는 공법단체 출범 당시 내걸었던 열악한 5월 단체 재정을 개선하고 유공자들의 복지를 향상하자는 취지가 무색해졌다고 지적했다.

정수만 전 5·18유족회장은 "공법단체를 성급하게 만들었다가 자칫 운영이 부실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이 된 것"이라며 "각 단체가 이해관계만을 좇을 것이 아니라 자정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 동림호 납북 여수 선장 50년 만에 명예회복

### 광주고법, 재심서 무죄 선고

"고문에 못 이긴 거짓 자백 때문에 저와 가족들은 50여 년을 뺨맞아 살아야 했습니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복역한 동림호 선장 신평욱(84)씨가 7일 오후 광주지법 201호 법정에서 광주고법 형사 1부(고법판사 박혜선) 심리로 열린 재심에서 최후 변론을 했다.

신씨는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려준 재판부와 무죄 의견을 낸 검찰에 감사의 뜻을 밝히며 진술을 시작했다. 그는 "어떠한 의도도 없었고 가장으로서 노부모와 처자식을 먹여 살려야 한다는 생각으로 어부저지선 근처에서 조업했을 뿐"이라고 납북 경위를 설명했다.

그는 "전향하라는 경찰들의 회유와 감시 뿐 아니라 고향 사람들마저 나를 감시하는 세월을 살아왔다"면서 "복역하고 고향에 왔지만 고용해줄 선주도 없었고 고문으로 온몸이 만신창이가 돼 힘든 일을 할 수 없었다"고 눈시울을 붉혔다.

신씨는 심지어 "나를 대신해 더 많은 일을 해야

했던 아내의 손을 재판부에 보여주고 싶다"고 절규했다. 그는 "나로 인해 시작된 비극은 우리 가족 모두를 힘들게 했다"고 자책하기도 했다.

신씨의 최후 변론을 경청한 재판부는 "납북 경위, 신씨의 이후 행적 등 재판 사정을 비추볼 때 당시 검찰의 공소사실은 신씨의 생애와 신체에 위해를 가해 강요된 것으로 봐야 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신씨는 1971년 5월 20일 인천 연평도 인근 바다에서 조기를 잡다 선원 8명과 함께 북한경비정에 납치돼 이듬해 5월 10일 풀려나 고향 여수에 도착했지만 1973년 9월 국가보안법, 반공법, 수산업법 위반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월이 확정됐다.

1974년 1월 만기 출소한 그는 불법 구금과 가혹 행위를 당했다며 50여년 만인 지난해 10월 광주고법에 재심을 청구했고 지난 6월 재심개시 결정을 받았다. 검찰은 재심에서 "50여년 전 검찰이 이 사건과 관련해 적법절차 준수와 기본권 보장 책무를 다하지 못한 점에 대해 현재 감사의 일원으로서 피고인에게 깊이 사과드린다"며 신씨의 무죄를 구형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사랑의 밥차' 무료 급식  
광주남구자원봉사센터 자원봉사자들이 7일 광주시 남구 진월동 푸른길 공원에서 '사랑의 밥차' 무료급식 활동을 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 기초의회 의장 치적 홍보 공무원 항소심서 유죄

지방선거를 앞두고 기초의회 의장의 치적을 홍보한 공무원이 1심에서 일부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항소심에서는 유죄를 선고 받았다.

광주고법 형사 1부(고법판사 박혜선)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은 A(55)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을 파기하고 무죄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의회 전문위원이었던 A씨는 지난 2021년 7월

전남 모자치회의 의장 B씨의 업적을 홍보하는 보도자료와 신문 광고를 제작·배포하고, 선거관리위원회에 보도자료 발송 언론사 목록을 축소해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선관위에 자료를 허위 제출한 혐의만 유죄로 봤다. B씨가 당시 후보자 신분인 아니었고 후보자로 나올 여부를 알 수 없었다는 판단에서였다.

검찰은 1심이 법리를 오해했다고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B씨의 업적을 홍보하는 보도자료와 신문광고를 게재한 A씨의 행위는 공무원 직무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고 판시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 정교사 전환 대가 금품...명진고 전 이사장 법정구속

기간제 교사를 정교사로 전환해 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학교법인 전 이사장이 법정구속됐다.

광주지법 형사 7단독(부장판사 전일호)는 7일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도연학원 전 이사장 A(75)씨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A씨 동생 B(64)씨에게는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3년과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에게 금품을 건네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C(66)씨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

예 2년을 선고했다.

A씨와 B씨는 2016~2017년 기간제 교사였던 C씨 아들을 명진고 정교사로 채용해주겠다고 C씨에게 2차례에 걸쳐 2억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재판에서 "동생이 C씨로부터 돈을 받았을 뿐 자신은 돈을 받은 적도 없고, 동생과 공모한 적도 없다"고 혐의를 부정했다. B씨도 "자신이 받은 1억 5000만원에서 본인이 사용한 5000만원은 단순히 빌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B씨가 돈을 같이 나눠 썼을 뿐이라며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부정청탁 채용으로 채용 공정성과 교육기관에 대한 신뢰가 침해돼 명진고 학생과 교직원, 졸업생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A씨가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범행을 부인하면서 B씨에게 책임을 떠넘긴 점, 수사 중에도 말을 맞출 것을 종용하거나 법정에서 허위 증언을 한 점, 과거에도 학교 법인 관련 횡령죄, 교사 채용 비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일부 금액은 돌려준 점 등을 두루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평생어부바  
**광주문화신협**

# 힘 으로

튼튼한 금융의  
따뜻한 협동의

광주문화신협이  
평생어부바 해드리겠습니다

자산규모  
1조5천억원

1993년 창립 이후  
27년 연속 흑자경영

복지장학재단  
운영

당기순이익의 7%이상  
지역사회환원

**대표번호 1644-7990**